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66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 의 자 : 강경숙 · 신장식 · 박은정

임호선 · 이해민 · 김재원

김문수 · 서왕진 · 김선민

진선미 · 최혁진 · 차규근

황운하 · 정춘생 · 김준형

백선희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급식 시설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학교급식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들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근거가 없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지난 2021년 처음으로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학교급식 시설의 인력 부족으로 기존 인력이 장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적정한 업무량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의2 신설 등).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 시설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영양교사·영양사·조리사·조리원·조리실무사 및 배식원 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3항”으로 하고, 제3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운영에”를 “운영,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방법 등에”로 한다.

3.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1인당 적정 식수인원 등 업무량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⑤ 학교급식위원회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기준 업무량)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1인당 적정  
식수인원 등 업무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량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공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생 략) <u>&lt;신 설&gt;</u>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 시설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영양교사·영양사·조리사·조리원·조리실무사 및 배식원 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u>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u> 2. (생 략) <u>&lt;신 설&gt;</u>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 ----- ----- ----- ----- 1. <u>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u> 2. (현행과 같음) 3. <u>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u> 4. <u>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1인당 적정 식</u>
<u>&lt;신 설&gt;</u>	

	<p><u>수인원 등 업무량 기준 준수 에 관한 사항</u></p>
<p><u>&lt;신 설&gt;</u></p>	<p><u>5.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u></p>
<p>3. (생 략) ② ~ ④ (생 략)</p>	<p><u>6. (현행 제3호와 같음)</u> ② ~ ④ (현행과 같음)</p>
<p><u>&lt;신 설&gt;</u></p>	<p><u>⑤ 학교급식위원회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p>
<p><u>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p>	<p><u>⑥ ----- ----- ----- ----- -----운영,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 · 방법 등에----- ----- -----.</u></p>
<p><u>&lt;신 설&gt;</u></p>	<p><u>제5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기준 업무량)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1인당 적정 식수인원 등 업</u></p>

무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을 실시  
하는 학교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량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공표  
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